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# 대 전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7가단4581 근저당권말소

원 고 A

피 고 1. 주식회사 [redacted]건설

2. [redacted]시

3. [redacted]공단

변 론 종 결 2017. 5. 17.

판 결 선 고 2017. 6. 2.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2004. 11. 5. 접수 제1123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공단은 제1의 가.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건설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 이 유

1.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건설(이하 '피고 [redacted]건설'이라 한다), [redacted]시에 대한 각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2. 피고 [redacted]공단에 대한 청구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는 2004. 11. 5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4. 1. 1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같은 날 피고 신도종합건설에게 채권최고액 14,300,000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2) 피고 [redacted]공단은 2014. 10. 13.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, 2014. 10. 20.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
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, 이 사건 근저당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[redacted]공단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[redacted]공단

피고[redacted]건설이 2010. 8.부터 2016. 11.까지 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, 고용보험료 등 합계 1,483,432,390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,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다. 판단

1)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,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,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(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다70041 판결,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, 나아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, 결국 피고 국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은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# 청 구 원 인

**1. 소멸시효의 완성**

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건설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4. 10. 15.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금14,300,000원으로 하여 2004. 11. 05. 접수 제1123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현재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건설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합니다.

(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)

**2. 부종성**

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습니다.

**3.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**

한편 피고 [redacted]시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합니다.

4. 결어

위와 같은 이유로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[redacted] [redacted]

[redacted] [redacted]

[redacted] [redacted]